

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이천시 이·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 등 10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

소관부서 : 감사법무담당관

제정 2023· 9· 8 규칙 제755호

제1조(「이천시 이·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」의 개정) 이천시 이·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5항 중 “만 19세”를 “19세”로 한다.

별지 제1호서식 제6호나목 중 “만 19세”를 “19세”로 한다.

별지 제2호서식 생년월일란 중 “만 세”를 “세”로 한다.

제2조(「이천시 주민자치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」의 개정) 이천시 주민자치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3호 중 “만 6세”를 “6세”로 한다.

제3조(「이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」의 개정) 이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지 제1호서식 제4호 중 “만 18세”를 “18세”로 한다.

제4조(「이천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」의 개정) 이천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지 제2호서식 연령란 중 “만 세”를 “세”로 한다.

제5조(「이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시행규칙」의 개정) 이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지 제6호서식 보육나이란 중 “만 세”를 “세”로 한다.

제6조(「이천시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」의 개정) 이천시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만 19세”를 “19세”로 한다.

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이천시 이·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 등 10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

제7조(「이천시 청소년보호법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규칙」의 개정) 이천시 청소년보호법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제11호바목 중 “만 65세”를 “65세”로 한다.

제8조(「이천시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·운영 조례 시행규칙」의 개정) 이천시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·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3 비고 중 “19세 이상 만 64세”를 “19세 이상 64세”로, “만 13세 이상 만 18세”를 “13세 이상 18세”로, “만 12세”를 “12세”로 한다.

제9조(「이천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」의 개정) 이천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2 단체의 선발나이란 중 “만 18세”를 “18세”로, 개인의 선발나이란 중 “만 18세 이상 만 40세”를 “18세 이상 40세”로 한다.

제10조(「이천시 농업인 대상 조례 시행규칙」의 개정) 이천시 농업인 대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지 제1호서식 제1호 나이란 중 “만 세”를 “세”로 한다.

부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